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김태호 · 박정하
김 건 · 서천호 · 윤한홍
안철수 · 김승수 · 이상휘
박덕흠 · 김용태 · 김재섭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,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(이하 “전자장치”라 함) 부착의 경우 3개월,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.

그런데, 스톱킹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으며,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협에 다시 노출될 우려가 있음. 실제로 신당역 및 남양주 스톱킹 살인 사건은 모두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

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9조).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단서 중 “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(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)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